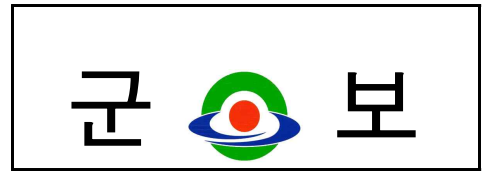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2호 2023. 3. 20.(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44호)
-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45호)
-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46호)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47호)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48호)

규 칙

-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1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44호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중등교육법」 제
2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예천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명품 교육도시에 걸맞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학준비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45호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분		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대상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면이 8m이상 포장된 도로 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대상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18㎡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면이 4m이상 포장된 도로 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할 것

◇개정이유

-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변경하여 완화된 규제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4조)

- 법 제6조제2항 ⇨ 법 제6조제3항

나. 도로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3호)

다.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 변경(안 별표)

-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사업소 부지 시설기준(도로 폭) 변경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12m이상 도로 ⇨ 8m이상 포장된 현황도로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 6m이상 도로 ⇨ 4m이상 포장된 현황도로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46호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하며, 취약계층의 범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4조 중 “사업 활동을”을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대기환경보전법 · 제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호 중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아동관련 시설, 경로당 등”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군수는 · 대기환경보전법 · 제8조”를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제도개선 과제로 지자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로 규정

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구체화 (안 제4조)

- 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포함

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안 제8조)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안 제13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47호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예천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감염병 관리,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 개선에 관한 사항

나.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보건 관련 기념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에 규정된 보건의 날

나. 「치매관리법」 제5조에 규정된 치매극복의 날

다. 「암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암예방의 날

라. 「구강보건법」 제4조의2에 규정된 구강보건의 날

마.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임신부의 날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정신건강의 날

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자살 예방의 날

아. 「결핵예방법」 제4조에 규정된 결핵예방의 날

자. 이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교통수단”이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

제4조(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념일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물 · 경품 등 지원)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교육용 활동복, 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건사업 참여자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행사 시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운동기구·재활 기구 등의 대여와 보건교육, 영양 실습 시에 필요한 재료,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군수는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중 소득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등 편의 제공)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
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개방사용

제9조(위탁)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료 행위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의료기관,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규정과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건강증진사업, 보건 관련 기념일, 교통수단에 대한 정의 규정

나.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해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
-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 홍보물, 경품 등을 지원
-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게 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를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는 교통수단 제공 및 보건소 시설물 개방 등 주민 편의 제공
-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및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가능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48호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상행위의 사용료”를 “상행위의 사용료, 활체험센터 사용료”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활체험센터 사용료

구분	종목	구성 및 수량	금액(원)	비 고
일반 프로그램	리 커 브 체 험	20	6,000	
		30	8,000	
	국 궁 활 쏘 기 체 험	20	6,000	
		30	8,000	
	호 버 볼 체 험	20	5,000	-
	흡 착 활 체 험	20	5,000	-
	AR 무 빙 타 겟 체 험	10	6,000	
	활 서 바 이 벌	3판 2승제 (경기시간 6분)	10,000	1인 - 10,000원 6인 이상 시 체험가능
	자세교정	양궁리커브 1:1 강의 및 코칭 (1시간)	40,000	
패키지 프로그램	만원의 행복 #001	리커브 20 호버볼 20	10,000	1인 - 10,000원
	만원의 행복 #002	리커브 20 흡착활 20	10,000	1인 - 10,000원
	만원의 행복 #003	호버볼 20 흡착활 20	10,000	1인 - 10,000원
	만원의 행복 #004	리커브 40	10,000	1인 - 10,000원
단체 프로그램 (10인 이상)	활소풍	양궁 리커브, 흡착활체험(안전활), 활서바이벌, 호버볼, 전통놀이	37,000 (체험비+식비)	6세 이상 어린이 / 초등학생~성인단체
			30,000 (체험비)	
	진로체험 패키지 (2시간)	양궁, 호버볼, 흡착활, 활서바이벌 ※ 저학년 - 전통놀이	20,000	학생 단체
	2만원 패키지 (2시간)	양궁, 호버볼, 흡착활, 활서바이벌	20,000	성인 단체

◇개정이유

- 활체험센터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중 활체험센터 사용료에 대한 내용 신설(안 별표 6)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17호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를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의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예천군의회회의장(이하 “군의회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이하의 공사”를 “이하인 공사”로, “이하의 용역·제조”를 “이하인 용역·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실·과장 등”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중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를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실·과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장”을 “군의회의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97조”를 “제77조”로, “직무대리규정”을 “직무대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출납원”을 “출납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35조제1항”을 “제105조제1항”으로, “직무대리규정”을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②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예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 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군 의 회	제 1관서 (읍·면 제외)	읍·면	기타 관서
회 계 책 입 관	기획예산실장	-	-	-	-
징 수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분 입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또는 세입업무담당	-	-
재 무 관	부군수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입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및 담당관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및 담당관	사무과장	관서의 장	읍·면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군수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및 담당관	사무과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	-
지 출 원	경리팀장	의정팀장	회계지출업무팀장	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징수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의정팀장	세입업무팀장	부면장 (예천읍은 재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각 부서별 서무업무팀장	-	서무업무팀장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서무업무팀장, 담당이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부읍·면장	서무업무팀장, 담당이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0000팀장 :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맑은물사업소, 읍·면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를 제외한 관서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7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경비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8. 기타 군에서 정한 경비	“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7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2. 12. 19. 개정, '23. 1. 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예천군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개정 :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칙 재편

- 자치단체 공통규정은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
- 자치단체 규칙에는 훈령에서 위임한 8개 조문만 존치
 - 징수관·재무관의 직무위임, 재정 사항의 합의 등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약기준 정비